
10 () 11 4 (")
") 1 1 30 .
(" ") , , .<

[2008.2.29, 2010.3.15](#)>

, , , , 가
, , , , 가
가 .< [2008.2.29, 2010.3.15, 2010.7.12](#)>

, 2 1 .
11 4
, .
2 ,
.< [2008.2.29, 2010.3.15](#)>

4 6 , 8 9 . " " "
" , " " " " .

11 () 12 2 .

- 1 .
2. 가
3.
4.

12 () 13 (" ")
) 1 30 .
, 2 1 .

1.
2.
3.

1. , , ,가

2. ,

3. • , ,

4. , ,

5.

6. 가

7.

8. • •

9.

19 () 18 2005 3 1 ,

. < [2008.2.29, 2010.3.15](#) >

1 .< [2008.2.29, 2010.3.15](#) >

20 () 32 1 2 " " 84 1 "

" ,

.

21 () 33 (" ")

• • (.)

.

1. 「 」 11

2. 「 • 」 21

3. 가 5

5

• • 1

「 」 7

.

22 () .

1. 가

2. • •

3. •

4. •

5. • •

6. . .

7.

8.

23 () 가 37 3
(" ") .

1.

2. , 가

3. .

가 1

24 () 41

. < [2008.2.29, 2009.12.31, 2010.3.15](#) >

1.

2.

3.

4.

5.

6.

1 ,

. < [2008.2.29, 2010.3.15](#) >

25 () 41

. . . .

< [2008.2.29, 2010.3.15](#) >

. . . 1

,
가 「 」 「 가 」 24 1

. < [2010.3.15](#) >

26 () 41

. < [2008.2.29, 2010.3.15](#) >

. . .

. < [2008.2.29, 2010.3.15](#) >

1 가 . . .

. . . 2

27 () 가 , (" 가 ")가 42 1
(15)

가 가 「 」 27 3
「 」 13 3

< 2009.7.27 >

1 " "

1. 「 」 4

2. 「 」

3.

가 1 가

가 .

1. 20

2. 20 가

28 () 44 1 3
가 (" ")
3

가 . < 2008.2.29,

2010.3.15 >

가 1

. < 2009.12.31 >

1. 가 .

2. 5 .

3. 100 70 [「

」 4 1 1 2 (" ") 1

1.5]

2

가

2

. < 2008.2.29, 2010.3.15 >

1

. < 2008.2.29, 2010.3.15 >

가

44 2 가

2

29 (가) 가 44 1 가

가 28 1

.< 2008.2.29, 2010.3.15>

2 가 가

가 .< 2008.2.29, 2010.3.15>

30 () 49 18

「 」 가

(補填) , 2

50 1

1. 18 (「 」)
20

2.

3. 「 」 가

50 2

1. 「 」

2. 18 (20

「 」

)

31 () 30 (" "

.< 2008.2.29, 2010.3.15>

. . . 1

2

32 ()

15 , 16

100 50 , (.
, 「 」 가 가 .
· ·) .
20 ()

, 3 .<
[2009.12.31, 2010.3.15](#)>

1.

2.

3. 가

2 · · ·

.< [2009.12.31, 2010.3.15](#)>

3 2

· · · .< [2009.12.31, 2010.3.15](#)>

2 가 가

가

.< [2009.12.31](#)>

33 ()

.< [2008.2.29, 2010.3.15](#)>

34 () 51

(" ")

30

가 30

35 () 55

.< [2008.2.29, 2010.3.15](#)>

55 1

1.

2. 가

3.

4.

. . . 1

.<

[2008.2.29, 2010.3.15>](#)

가 1

1 4

.< [2008.2.29, 2010.3.15>](#)

36 () 58 1 5 " "

37 (가) 73 1 . 가

(" 가 ") 1 .< [2008.2.29, 2010.3.15>](#)

73 2 가

. (" 가 ") .<

[2008.2.29, 2010.3.15>](#)

1. 가 .

2. 가 . 가

가 가

, , 30

.< [2008.2.29, 2010.3.15>](#)

38 () 가 ,

1.

2. .

3.

4. .

5. .

6.

7.

1

가 6 , 4
6

39 () 가 가
1

40 (가) 가 가
가
가 가 ,
< [2008.2.29, 2010.3.15](#) >

- 1.
2. 가

41 () 가 가
가·

42 () 79 36 1 , 38 1 , 43 1 , 49 1 ,
50 1 · 2 , 55 1 , 66 1 67 1 · 2
가 가 , 「 」
59 1 가
가

43 () , · · 80 1
(實費)
가 「 」
< [2008.2.29, 2010.3.15](#) >

44 () 가 81
「 」
1 가 가 「
」 43 가

45 () , . . .
. < 2008.2.29, 2010.3.15 >

- 1. 62
- 2. 70 1 .
- 3. 76 .

46 (.) . . 89 2

.
.
. . 1 10
()

. . ,
4 .
. < 2010.3.15 >

< 22269 ,2010. 7.12 >

1 () . < >

2 () <102>

<103>

3 3 " " " "

10 3 " " " "

<104> <136>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 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癲疾障礙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 2] <개정 2010.3.15>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6. 교 궁	100분의 100
7. 능 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제28조 관련)

우선구매품목	우선구매비율
1. 사무용 양식(봉투, 진행문서 파일, 책 표지)	100분의 5 이상
2. 사무용 종이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100분의 5 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 부속물(넥타이, 손수건)	100분의 20 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포대)	100분의 20 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100분의 5 이상
8. 가구류	100분의 5 이상
9. 전자·정보 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0분의 5 이상
10.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00분의 5 이상
11.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00분의 5 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물	100분의 5 이상
13. 현수막	100분의 5 이상
14. 종이컵	100분의 5 이상
15. 상자(마분지 및 골판지 상자)	100분의 5 이상
16. 신발류	100분의 5 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00분의 5 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100분의 5 이상

[별표 4] <개정 2010.3.1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법 제89조제1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법 제89조제1항 제2호	200만원
3.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법 제89조제1항 제3호	200만원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89조제1항 제4호	150만원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 재개, 시설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89조제1항 제5호	150만원
6.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89조제1항 제6호	150만원
7.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법 제89조제1항 제7호	150만원